

1. 면세 적용대상

1)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내용

- 미가공식품(외국산 포함)
-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서 미가공된 것(국산만 면세, 외국산은 과세)
- 수돗물(선박급수업자가 선박 등에 공급하는 물은 과세, 생수는 과세)
-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은 과세)
- 여성용 생리용품
-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여객열차 등 일반대중여객 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특수자동차, 특종선박은 과세)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관련 재화·용역

내용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약품조제용역은 면세이나, 의약품자체는 재화로서 조제없이 판매하는 의약품은 과세)

-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과 애완동물진료용역(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은 제외)은 과세

- 산후조리원은 면세

② 교육용역

-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은 면세(교육내용은 불문, 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임)

3) 문화관련 재화·용역

내용

- 도서(첨부 CD등과 전자출판물 포함)와 도서대여 용역
- 신문·잡지(광고는 과세)
- 예술창작품(골동품 및 모방제작 미술품 등은 과세)
- 예술의·문화행사 및 아마추어 운동경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함)
-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에의 입장(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

4) 부가가치 생산요소

부가가치 생산요소가 되는 자본, 토지, 인적 용역과 관련된 다음의 것은 면세

내용

- 금융·보험용역
- 토지의 공급*1
-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2

*1. 건물의 공급은 과세(단,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건물의 공급은 면세)

*2.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는 면세대상이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사업은 과세대상임

5) 기타

내용

- 우표(수집용은 과세)·인지·복권·공증전화
- 특수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것, 군용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 등)
-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1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다음의 재화·용역은 과세

- 우정사업조직의 방문 소포,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운용업 등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내용

-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1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	부동산의 공급		부동산의 임대	
	건물	국민주택	면세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이외		과세	주택이외의 임대	과세
토지	면세		일반적인 경우	과세
			주택부수토지	면세

7) 특정 제한의 수입

면제되는 수입제한의 내용

- 미가공식품(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식품은 제외)
- 도서, 신문 및 잡지
- 학술 또는 교육기관 등이 과학, 교육,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제한
- 종교, 자선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제한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제한
- 이주,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제한으로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제한
- 여행자휴대품 등으로서 관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제한 등
- 견본품,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제한 등
- 일시수입 또는 재수입제한(관세가 경감되는 부분에 한함)
- 조약 등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제한

2. 면세포기

1) 의의 및 취지

- 면세포기란 면세사업자가 해당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적용을 포기하고 과세로 적용받는 것을 말함
- 면세의 적용이 항상 공급자(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님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원가에 산입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
 - 특히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경우에는 완전면세제도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면세포기의 대상

-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제도 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포기 대상을 ①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및 용역 ②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제한

3) 면세포기 신고와 효력

- 면세포기는 승인의 요건이 없고, 신고기한도 없으므로 언제든지 가능
- 면세포기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면세포기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불가능
-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 제출
-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 포기 간주

※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그대로 면세가 적용된다.